

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

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의 별지 서식은 보안위반행위 처벌 시 불복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, 부패행위신고 등의 경우에도 비밀준수의무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패행위신고 등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, 이번 개정을 통해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하고, 부패행위신고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불복신청 제한 삭제 및 부패행위신고 면책 신설

별지 제3호 서식 중 “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해 처벌받음을 물론,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” 문구를 삭제하고, “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,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”이라는 문구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안각서

본 기관(또는 인)은 주택임대차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협조(제공) 받은 자료를 지침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,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(다만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).

구분	소속기관명	부서	성명	서명
수령자				
책임자				

. . .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